#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- 1 '	호	제출연월일 : 2004. 02 제 출 자 : 이 천 시 장					
		청소년문화의집"이 시내권(창전동)에 신축 조성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					
	주요골자 제2조중 명칭과 위치란를 다음과 같 명 칭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 집 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 집	이 한다. 위 치 이천시 창전동 420-8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-9					
□ 개정조례안 : 별첨							
	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						
	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						
	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						

□ 예산수반사항 : 2004년도 예산반영

### □ 사전예고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 2003. 10. 29 ~ 2003. 11. 17

○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## 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명칭과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
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창전동 420-8
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 집	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-9

##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실·과·소	사회복지과		
	실・과・소장	과 장		
입	직위・성명	서 광 자		
	담당・팀장	청소년담당		
안 기	직위・성명	박 회 자		
사	담 당 자	박 회 자		
	성명・전화	(644-2230)	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 (명칭 및 위 명칭 및 위치는		제2조		
명 칭	위 치	명 칭		위 치
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	이천시 부발읍 무 <del>촌</del> 리 168-9			시 창전동 420-8 ] 부발읍 무촌리 168-9